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667
----------	-------

발의연월일 : 2026. 8. 20.

발 의 자 : 강명구 · 김미애 · 구자근
서천호 · 김정재 · 성일종
엄태영 · 김용태 · 이성권
임종득 · 정동만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광주 지역 여성 소방공무원이 직장 내 갑질로 안타깝게 사망하고, 이에 대한 유가족 측의 조사 요구를 묵살하거나 셀프조사로 방치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회적인 공분을 일으키고 있음

이와 관련해, 시·도 단위로 분절된 소방 특유의 인사 구조가 이번 사건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음. 즉 근무지역에 따라 승진 기회가 제한된 지휘관이 계속 그 지역에서만 소방서장으로 근무하고 다른 시·도 등으로부터 우수 지휘관이 유입되지 못해 지역 연고주의나 서열주의가 고착화되어 음주 강요 등 갑질 비위는 쉽게 발생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문제제기는 어렵고, 조사를 하더라도 제 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처분만 이뤄지는 폐쇄적 조직문화를 야기하여 소방의 역량을 떨어트린다는 것임

이에, 대통령과 소방청장이 소방청과 시·도 소방기관 간 또는 시·

도 소방기관 상호간에 인사교류와 인력의 균형있는 배치, 정원 조정 등 필요한 경우 소방 지휘관(소방장 이상) 등의 전보를 실시하고, 소방준감 이상 고위직으로의 통합승진심사와 이에 필요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연고에 얽매인 폐쇄된 조직문화를 혁신하고, 소방기관 상호간 전문성 공유와 협업 강화, 지휘관에 대한 동기부여와 내부경쟁을 유도하여 소방의 정책품질을 높이고,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6조제5항).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대통령과 소방청장은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한 경우라도, 소방청과 시·도 간, 시·도 상호 간의 승진임용, 인사교류 또는 정원의 조정 등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사할 수 있다.

1. 소방청과 시·도를 통합하여 실시하는 소방준감 이상 계급으로의 승진임용
2. 소방청과 소방준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공무원의 소방청과 시·도 간, 시·도 상호 간 전보 및 파견
3. 「소방기본법」 제3조의2에 따라 시·도 소방기관 및 소방본부에 배치된 시·도별 소방공무원의 정원 조정에 따른 전보 및 파견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임용권자) ① ~ ④ (생략)	제6조(임용권자)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설>	<u>⑤ 대통령과 소방청장은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한 경우라도, 소방청과 시·도 간, 시·도 상호 간의 승진임용, 인사교류 또는 정원의 조정 등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사할 수 있다.</u> <u>1. 소방청과 시·도를 통합하여 실시하는 소방준감 이상 계급으로의 승진임용</u> <u>2. 소방청과 소방준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공무원의 소방청과 시·도 간, 시·도 상호 간 전보 및 파견</u> <u>3. 「소방기본법」 제3조의2에 따라 시·도 소방기관 및 소방본부에 배치된 시·도별 소방공무원의 정원 조정에 따른 전보 및 파견</u>
⑤ · ⑥ (생략)	⑥ · ⑦ (현행 제5항 및 제6항

	과 같음)
--	-------